

장학금지급 규정

제정 2008. 2.20.
7차 개정 2017.10.31.
소관부서 장학복지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2조에 근거하여 교내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장학단체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 종류) ① 장학금은 그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교비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마장학금
2. 정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금 <개정 2014.10.1.>
3. 수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금
4. 정원의특별전형장학금
5. 성적우수장학금 <개정 2010.10.15>
6. 모범장학금 <신설 2010.10.15>
7. 특별공로장학금
8. 특별활동장학금
9. 체육특기자장학금 <개정 2014.10.1.>
10. 교직원장학금
11. 한마육성장학금
12. 면학장학금
13. 복지장학금
14. 보훈장학금
15. 가족장학금
16. 총장특별단체장학금 <개정 2009.5.22>
17. 고시장학금
18. 외국어우수장학금
19. 정보화능력우수장학금
20. 편입학장학금 <신설 2011.12.13>
21. 특별장학금 <신설 2012.3.1>
22. 여군ROTC장학금 <신설 2012.3.1., 개정 2014.10.1.>
23. 군사학장학금 <신설 2012.6.28.>
24. 비교과마일리지장학금 <신설 2017.10.31.>

③ 교외장학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외의 단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을 감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교내장학금

제5조(한마장학금) 입학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를 한마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등급에 따라 소정의 학기동안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고 도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금) 정시모집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한마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를 정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등급에 따라 입학 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제목 변경 및 전문 개정 2014.10.1.]

제7조(수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시모집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한마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를 수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입학 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8조(정원의특별전형장학금) ① 정원의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를 선발하여 그 종류와 등급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② 삭제 <2014.10.1.>

제9조(성적우수장학금) ① 학기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5.>

② 성적우수장학금은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0.15.>

[조 제목 변경 2010.10.15.]

제9조의2(모범장학금) ① 학기별로 성적 등이 우수하여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 중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를 모범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모범장학금은 2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10.15]

제10조(특별공로장학금) 학교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자, 학교 명예를 크게 드높인 자, 그 밖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활동장학금) 본교에서 주관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체육특기자장학금) ① 체육특기 실력이 우수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등급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공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제목 변경 2014.10.1.]

제13조(교직원장학금) 학교법인 한마학원 산하의 교(임)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한마육성장학금) 학교법인 한마학원의 자매 재단 또는 법인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면학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교내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복지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장애자 또는 그 자녀,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훈장학금) 「보훈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가족장학금) 배우자 및 직계가족 내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 또는 재적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총장특별단체장학금) 학생자치기구 또는 학생군사교육단의 간부로 활동하거나 그 밖에 교내기관 또

는 부서의 요원으로 활동하는 자에게 그 활동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제20조(고시장학금) ① 재학 중 국가임용 및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② 삭제 <2014.10.1.>

제21조(외국어우수장학금) ①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신입생에게 입학 시 외국어능력우수입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재학생에게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정보화능력우수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컴퓨터정보처리 능력이 우수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2(편입장학금) 편입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입학 시 편입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22조의3(특별장학금)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4(여군ROTC장학금) 여학생 중 학생군사교육단에 합격한 자에게 5차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 제목 변경 2014.10.1.]

제22조의5(군사학장학금) 군사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6.28.]

제22조의6(비교과마일리지장학금) 비교과마일리지장학금은 「장학금지급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7.10.31.]

제3장 교외장학금

제23조(선발 및 지급) 교외장학금의 장학생선발, 지급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등은 장학금 제공자 또는 단체의 규정을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선발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생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동점자 처리)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서 해당 학기 성적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이수학점이 많은 자
2. 저학년
3.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4. 연소자

제26조(장학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2개 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자
2. 수업연한(8개 학기. 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개 학기)이 초과된 자 <개정 2009.5.22.>
3. 학업성적이 장학별 선발기준에 미달된 자
4. 원에 의해 장학금을 포기한 자

제27조(이중수혜 제한) ① 각종 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금지한다. 다만, 이중수혜 대상자인 경우 수혜자에게 유리한 종목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중수혜 제한을 받지 않는 장학금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성적우수모범장학금, 복지장학금, 한마육성장학금(B급), 정보화능력우수장학금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장학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09.5.22.)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5.)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3.)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교내장학금 중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한마장학금, 학과(부)입학생적우수장학금, 수시모집입학생적우수장학금, 정원의특별전형장학금, 외국어능력우수입학장학금, 복지장학금, 편입학장학금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3.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28.)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교내장학금 중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정시모집입학생적우수장학금, 정원의특별전형장학금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0.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교내장학금 중 수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 편입학장학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장학금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08. 2.20.
18차 개정 2017.10.31.
소관부서 장학복지팀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장학금지급 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내장학금)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 선발기준,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학교 회계연도 수입예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장학금 수혜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

제3조(이중수혜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학금은 이중수혜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중수혜 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2017.10.31.>

1. 특별활동장학금
2. 면학장학금
3. 체육공로장학금
4.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5. 정보화능력우수장학금
6. 비교과마일리지장학금
7. 장학금 수혜에 따른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 장학금(군장학금 등)
8. 공로금 또는 위로금의 성격을 가진 장학금
9. 학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수혜 받은 장학금

②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1. 복지장학금
2. 가족장학금
3. 총장특별단체장학금
4. 여군ROTC장학금 <개정 2013.3.1.>

[제목변경 2013.3.1.]

제4조(성적우수장학생 및 모범장학생선발방법) ① 장학복지팀에서는 성적우수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등급별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학과(부)에 통보한다. <개정 2010.10.15.>

[제목변경 2010.10.15.]

② 학과(부)에서는 모범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등급별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5.>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성적우수장학생 및 모범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해당학기 수강신청학점 중 미취득과목이 있는 자
2. 12학점 미만 수강신청자
3.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 수업연한초과자, 졸업유예자, 학점인정관련 유학생인 자(교환학생 등), 외국인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자, 원에 의한 장학금 포기자, 군위탁생 <개정 2015.9.15., 2016.8.18.>
4.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정되는 자

④ 학과(부)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제5조(제외학점) 특별학점, pass학점, 계절제 취득학점, 대학원 교과목 수강학점은 장학사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8.18.>

제6조(제출서류)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자는 학생처장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지정양식의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과생 처리) 성적관련 장학사정에 있어서 전과생은 전과 전 학과(부)의 장학사정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 지급액은 전과 전 학과(부)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 전과 후 학과(부)의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환수 등)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수업일수 2분의 1 이전에 수혜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당해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업일수 2분의 1 이후에 수혜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그 수혜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제사정 금지)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하거나, 이중수혜 등으로 인하여 환수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도서비 지급) 교내 또는 교외장학금을 수혜하였으나 총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도서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성적우수모범장학금, 복지장학금, 한마육성장학금(B급), 정보화능력우수장학금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장학규정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폐지된 「장학규정시행세칙」의 별표 1의 월영장학, 한마장학, 입학성적우수장학(계열별수석장학, 단과대학성적우수장학), 군사학여학생장학, 외국인장학 및 형설장학을 적용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외국어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체육특기장학금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성적우수모범장학금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교내장학금 중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한마장학, 학과(부)입학성적우수장학, 수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 정원의특별전형장학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교내장학금 중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한마장학금, 학과(부)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금, 정원의특별전형장학금, 외국어능력우수입학장학금, 복지장학금, 편입학장학금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28.)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교내장학금 중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군사학장학금, 수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금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복지장학에 관한 사항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0.)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교내장학금 중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한마장학금, 학과(부)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금, 정원의특별전형장학금, 군사학장학금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0.15.)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개정된 교내장학금 중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한마장학금, 정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군사학장학금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5.15.)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15.)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개정된 교내장학금중 외국인 신·편입학장학 및 외국인장학은 2015학년도 2학기 신·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외국인 신·편입학장학B와 외국인장학은 2015학년도 2학기 이전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16.8.18.)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개정된 교내장학금 중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한마장학금, 정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금, 수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금은 2017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조제3항제3호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3.27.)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0.3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개정된 교내장학금 중 한마장학, 정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 수시모집입학성적우수장학, 편입학장학, 정원의특별전형장학, 외국어능력우수입학장학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17.10.31.>

교내장학금(제2조 관련)

장학종별		선발기준	수혜내역	비고
한마장학 (정시/수시)		· 수능 국어, 수학(가/나),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인 자	· 4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해외연수경비 지원(재학중 2회)	· 수시모집 지원자 중 해당자는 수능 성적표를 입학처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 (수능 성적표 제출자는 수능 온라인제공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다만, 3개 학기 이상 성적 미달시에는 자격 상실) · 정원의특별전형 제외
정시모집 입학성적 우수장학	A급	· 모집단위별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이면서 수능반영성적(3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인 자	· 1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 해외연수경비 지원(재학중 1회)	· 수능 등급은 해당 모집단위별 수능반영 방법을 적용하며, 수학 '가'형 응시자는 해당 영역의 등급을 1등급 상향 적용한 후 반영함 · 정원의특별전형 제외
	B급	· 모집단위별 입학성적이 상위 20% 이내이면서 수능반영성적(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인 자	· 입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C급	· 모집단위별 입학성적이 상위 30% 이내이면서 수능반영성적(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 이내인 자	· 입학 해당학기 등록금 1/2	
수시모집 입학성적 우수장학	A급	· 전형별 단과대학별 입학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자	· 1년간 등록금 전액(입학금포함)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 해외연수경비 지원(재학중 1회)	· 군사학과전형 제외 · 체육특기자전형 제외 · 정원의특별전형 제외
	B급	· 전형별 단과대학별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 입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해외연수경비 지원(재학중 1회)	
	C급	· 전형별 단과대학별 입학성적이 상위 15% 이내인 자	· 입학 해당학기 등록금 1/2	
	D급	· 전형별 단과대학별 입학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자	· 입학 해당학기 등록금 1/3	
정원의 특별전형 장학	A급	· 농어촌학생전형 및 특성화고동일계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의 합격자 중 입학성적이 각각 상위 10% 이내인 자(수시모집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급여수급자전형 합격자	· 입학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및 이후 7학기간 매학기 100만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전형 합격자는 입학 해당 학기 이후부터 본교의 복지장학(희망장학)을 적용함)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B급	· 농어촌학생전형 · 특성화고동일계전형 ·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의 합격자	· 4년간 매학기 100만원	

장학종별		선발기준	수혜내역	비고	
정원의 특별전형 장학	군위탁장학	· 정원 외로 입학한 군위탁 편입생 중 · 전적학교 및 재학성적이 우수한 자	· 학기별 소정의 금액	· 직전학기성적 평점평균 C 이상	
	외국인	A급	· 자매학교 및 본교 한국어교육과정을 · 수료한 외국인 신·편입생	· 정규학기이내 등록금 50% (입학금 면제)	
		B급	· 외국인 신·편입생	· 정규학기이내 등록금 50%	
	신· 편입학 장학	C급	· TOPIK 4급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70% (입학금 면제)	· 신입생에 한함
		D급	· TOEFL IBT 90, TOEIC 850, IELTS 6.5 ·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면제)	· 신입생에 한함 · 영어권국가 출신 제외
		E급	· TOEFL IBT 85, TOEIC 800, IELTS 6.0 ·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70% (입학금 면제)	
		F급	· TOEFL IBT 80, TOEIC 750, IELTS 5.5 ·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50% (입학금 면제)	
	외국인 장학	A급	·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 4.0이상 ~ 4.5인자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직전학기성적 평점평균 A0이상
		B급	·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 3.5이상 ~ 4.0미만인자	· 해당학기 등록금 70%	· 직전학기성적 평점평균 B+이상
		C급	· 입학시 취득한 TOPIK 성적에서 · 6급으로 상향된자	· 해당학기 등록금 100%	· 직전학기성적 평점평균 C+이상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함]
		D급	· 입학시 취득한 TOPIK 성적에서 · 5급으로 상향된자	· 해당학기 등록금 80%	
		E급	· 입학시 취득한 TOPIK 성적에서 · 4급으로 상향된자	· 해당학기 등록금 70%	
성적우수 장학	A급	· 학과(부)별 장학사정인원의 상위 · 0.6% 이내인 자 (90명 이상인 학과(부)에 한함)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장학사정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 · 균 3.650 이상	
	B급	· 학과(부)별 장학사정인원의 2% · 이내인 자 (45명 이상인 학과(부)에 한함)	· 해당학기 등록금 2/3		
	C급	· 학과(부)별 장학사정인원의 6% · 이내인 자	· 해당학기 등록금 1/2		
모범 장학	A급	· 학과(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 학과(부)별 장학사정인원의 10% · 이내인 자	· 해당학기 등록금 1/3		
	B급	· 학과(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 학과(부)별 장학사정인원의 23% · 이내인 자	· 해당학기 등록금 1/5		
특별 공로 장학	A급	· 학교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거나 · 학교 명예를 크게 드높인 자 또는 그 · 자녀 · 그 밖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 · 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 선발 시 별도 기준에 의함		

장학종별		선발기준	수혜내역	비고	
특별 공로 장학	B급	· 한마학원 또는 경남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던 교(임)직원으로서 학교법인 한마학원의 자매재단 또는 법인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4년간 등록금 2/3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특별활동장학		·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가자	· 일정 금액	· 해당부서에서 대상자 선발 · 이중수혜 가능	
체육 특기자 장학	A급	· 체육특기자 중 특기실적이 매우 우수한 자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해당학기 학사경고자는 제외함	
	B급	· 체육특기자 중 특기실적이 우수한 자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C급	· 체육특기자 중 특기실적이 양호한 자	· 해당학기 등록금 1/2		
	공로 장학	·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 30만원 내지 80만원	· 이중수혜 가능	
교직원장학		· 한마학원 산하의 교(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와 자녀 · 한마학원 산하의 교(임)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 다만, 교(임)직원과 그 배우자는 야간강좌 등록생에 한함.	
한마육성 장학	A급	· 한마학원 법인의 자매 재단 또는 법인에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해당학기 등록금 30%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면학장학		· 교내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업활동을 한 자	· 일정 금액	· 이중수혜 가능	
복지 장학	희망 장학	A급	· 부모나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신입생 : 최초학기부터 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B급	· 부모나 본인이 차상위계층 · A급을 제외한 부모나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C+ ~ B 미만) · 소득 1분위 자(한국장학재단 자료에 기초)	· 해당학기 등록금 100만원	· 신입생 : 최초학기부터 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C급	· 소득 2분위 자(한국장학재단 자료에 기초)	· 해당학기 등록금 50만원	· 신입생 : 최초학기부터 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D급	· 기타 가정형편 곤란 학생으로서 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된 자	· 선발시 별도 기준에 의함	
	나눔 장학	A급	· 본인 장애 1급	· 해당학기 등록금 200만원	· 신입생 : 최초학기부터 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B급	· 본인 장애 2,3급	· 해당학기 등록금 100만원	· 신입생 : 최초학기부터 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C급	· 본인 장애 4급 · 부모 장애 1,2,3급	· 해당학기 등록금 50만원	· 신입생 : 최초학기부터 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장학종별		선발기준	수혜내역	비고	
보훈장학	보훈본인	· 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 4년간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보훈자녀	· 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 4년간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 직전학기 성적 평점 70점 이상	
가족장학	3인재학장학	· 배우자 및 직계가족 내에서 3명의 재학생	· 1명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2인재학장학	· 배우자 및 직계가족 내에서 2명의 재학생이 있는 경우	· 1명 해당학기 50만원		
총장 특별 단체 장학	학생 간부	A급	·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 · 동아리연합회 회장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 이상 · 학과(부) 회장, 부회장, 총무는 편제정원에 따라 선발 1. 90명 이상 300명 미만 1명(회장) 2. 300명 이상 600명 미만 2명(회장, 총무) 3. 600명 이상 3명(회장, 부회장, 총무) · 직전학기 성적
		B급	· 총학생회 사무국장 · 총대의원회 사무국장, 상임위원(6) · 학군단 간부(4:대대장2, 대대참모2) · 단과대학 학생회 부회장	· 해당학기 등록금 2/3	
		C급	· 총학생회 국장(9) · 총대의원회 국장(10) ·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 학군단 간부(6:대대참모)	· 해당학기 등록금 1/4	
		D급	· 학과(부)회장, 학군단간부(4:중대장) · 동아리연합회 국장(5)	· 해당학기 등록금 1/5	
		E급	· 학과(부)부회장 · 총무 · 학과(부) 대의원	· 해당학기 등록금 1/7	
	신문방송국원	A급	· 학보사, 방송국, KT 국장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 C+ 이상
		B급	· 학보사, 방송국, KT 부국장, 부장 (5명/4명/3명) · 부장급대우 객원기자	· 해당학기 등록금 2/3	
		C급	· 학보사기자7, 방송국원12, KT기자4, 객원기자	· 해당학기 등록금 1/3	
	고시장학	A급	· 고등고시(행정, 외무, 기술, 지방)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5급 상당의 국가임용 및 국가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자	· 재학 중 등록금 전액	
		B급	· 고등고시(행정, 외무, 기술, 지방)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5급 상당의 국가임용 및 국가자격시험에 1차 합격한자	· 1년간 등록금 전액	
C급		· 관세사, 손해사정사, 공무원시험(법원직, 검찰직, 경찰간부)등 7급 상당의 국가임용 및 국가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자	· 한학기 등록금 전액		

* 학생자치기구별 국장인원은 학생처의 인정인원에 한함

장학종별		선발기준	수혜내역	비고		
외국어 능력 우수 입학 장학	외국어 능력 우수 입학 장학	A급	· OPIc AL, TOEIC Speaking 8급 (190~200), TOEIC 900점, TOEFL(IBT 101점), TEPS 848점, JPT 900점, HSK 6급(180~) 이상인 자	· 200만원 · 해외연수경비지원 (재학중 1회)	· 신입생에 한함 · 재학생은 재학중 취득한 외국어성적으로 외국어능력우수장학 신청 가능함 · 단, 해외연수경비지원은 외국어에 상관없이 재학중 1회에 한함 · 외국인 학생 제외	
		B급	· OPIc IH, TOEIC Speaking 7급 (160~180), TOEIC 800점, TOEFL(IBT 88점), TEPS 729점, JPT 800점, HSK 5급(195~) 이상인 자	· 150만원 · 해외연수경비지원 (재학중 1회)		
		C급	· OPIc IM, TOEIC Speaking 6급 (130~150), TOEIC 700점, TOEFL(IBT 72점), TEPS 595점, JPT 700점, JLPT 1급, HSK 4급(210~) 이상인 자	· 100만원 · 해외연수경비지원 (재학중 1회)		
	외국어 능력 우수 장학	외국어 능력 우수 장학	A급	· 관련학과(부): OPIc AL, TOEIC Speaking 8급 (190~200), TOEIC 950점, TOEFL(IBT 108점), TEPS 903점, JPT 950점, HSK 6급(195~) 이상인 자 · 인문사회계열: OPIc AL, TOEIC Speaking 8급 (190~200), TOEIC 900점, TOEFL(IBT 101점), TEPS 848점, JPT 900점, HSK 6급(180~) 이상인 자 · 이공계열·예체능계열: OPIc IH, TOEIC Speaking 7급 (160~180), TOEIC 800점, TOEFL(IBT 88점), TEPS 729점, JPT 800점, HSK 6급(180~) 이상인 자	· 100만원	·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 B 이상 · 관련학과(부) TOEIC, TOEFL, TEPS, OPIc: 영어학과, 영어교육과 JPT, JLPT: 일어교육과 HSK: 중국학과 ·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 · 외국인 학생 제외 · 이중수혜 가능 · 최대 100만원이내 지급
			B급	· 관련학과(부): OPIc IH, TOEIC Speaking 7급 (160~180), TOEIC 850점, TOEFL(IBT 94점), TEPS 790점, JPT 850점, HSK 5급(210~) 이상인 자 · 인문사회계열: OPIc IH, TOEIC Speaking 7급 (160~180), TOEIC 800점, TOEFL(IBT 88점), TEPS 729점, JPT 800점, HSK 5급(195~) 이상인 자 · 이공계열·예체능계열: OPIc IM, TOEIC Speaking 6급 (130~150), TOEIC 700점, TOEFL(IBT72점), TEPS 595점, JPT 700점, JLPT 1급, HSK 5급(195~) 이상인 자	· 50만원	
		외국어 능력 우수 장학				

장학종별		선발기준	수혜내역	비고
외국어 우수 장학	외국어 능력 우수 장학	C급 · 관련학과(부): OPIc IM, TOEIC Speaking 6급(130~150), TOEIC 750점, TOEFL(IBT 81점), TEPS 659점, JPT 750점, JLPT 1급, HSK 5급 (180~) 이상인 자 · 인문사회계열: OPIc IM, TOEIC Speaking 6급(130~150), TOEIC 700점, TOEFL(IBT 72점), TEPS 595점, JPT 700점, JLPT 1급, HSK 4급 (210~) 이상인 자 · 이공계열·예체능계열: OPIc IL, TOEIC Speaking 5급(110~120), TOEIC 600점, TOEFL(IBT 62점), TEPS 478점, JPT 600점, JLPT 2급, HSK 4급 (210~) 이상인 자	· 30만원	·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 B 이상 · 관련학과(부) TOEIC, TOEFL, TEPS, OPIc: 영어학 과, 영어교육과 JPT, JLPT: 일어교육과 HSK: 중국학과 ·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 · 외국인 학생 제외 · 이중수혜 가능 · 최대 100만원이내 지급
정보화능력 우수장학	A급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정보화 관련 기사(1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40만원	·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 B 이상 · 자격증유효기간: 입학 후 취득한 자 격증 · 관련 전공(컴퓨터, 정보통신) 대상자 는 등급별 장학금의 반액을 지급 · 등급별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 · 이중수혜 가능 · 최대 40만원 이내지급
	B급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정보화 관련 산업기사(2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 자	· 20만원	
편입학장학		· 편입으로 입학한 자	· 입학 해당학기 등록금 1/2	· 외국인 학생 제외
특별장학		·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 선발 시 별도 기준에 의함	
여군ROTC장학		· 여학생 중 학생군사교육단에 합격한 자	· 해당학기 등록금 1/2	· 5차 학기부터 수혜 가능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군사학 장학	A급	· 수능 3개영역(국어,수학,영어)의 합이 7이 내인 자	· 4년간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수시·정시모집〉 · A급: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A 이상 · B·C급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B+ 이상 · 수학 ‘가’ 형 응시자는 해당 영역의 등급을 1등급 상향하여 적용함
	B급	· 수능 3개영역(국어,수학,영어)의 합이 10 이내인 자	· 4년간 등록금 1/2	
	C급	· 수능 3개영역(국어,수학,영어)의 합이 12 이내인 자	· 4년간 등록금 1/4	
비교과 마일리지장학		· 비교과마일리지장학금 지급 지침에 따름	· 일정금액	· 해당부서에서 대상자 선발 · 이중수혜가능